

수원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529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5299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23 선고 2020가단21667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

피고, 피항소인 1. C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하

담당변호사 구민선

2. D종중

변론종결 2024. 6. 12.

판결선고 2024. 7. 2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23. 선고 2020가단216676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종중(등록번호:E) 대표자 F과 피고 D종중(등록번호:G) 대표자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7. 체결된 권리포기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각 취소한다. 피고 C종중(등록번호:E) 대표자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5. 21. 접수 제4413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등기소 2020. 5. 21. 접수 제44133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1종중 대표자 F이 피고2종중 대표자 H에게 종손배려금 6억 50,000원의 지급을 약정하고 권리포기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받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들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순한, 판사 조정민, 판사 조현준

[별지]

목 록

1. [토지] 경기도 광주시 답 1,601m²

원고1 공유자 지분 4분의 1

원고2 공유자 지분 4분의 1

2. [토지] 경기도 광주시 주차장 209m²

원고1 공유자 지분 4분의 1

원고2 공유자 지분 4분의 1

3. [토지] 경기도 광주시 전 2,021m²

원고1 공유자 지분 4분의 1

원고2 공유자 지분 4분의 1

4. [토지] 경기도 광주시 주차장 439m²

원고1 공유자 지분 4분의 1

원고2 공유자 지분 4분의 1

